#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1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최은석・김종양・박충권

김태호 · 서일준 · 고동진

신성범 · 김형동 · 이인선

박정하 · 김소희 · 김선교

김위상 · 서범수 · 김은혜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또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특수

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 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신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률 제2028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장제보조비 지급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의2제1 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⑥ (생 략)

법률 제20283호 특수임무유공자 법률 제2028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신 설>

개 아 정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75조의4(장제보조비 지원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 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 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 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 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신 설>

② (생 략)

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 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 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 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